

탬파 새빛 교회
(NEW LIGHT CHURCH OF TAMPA)

헌법 및 규약(안)

CONSTITUTION & BYLAWS

2023년 7월 9일 개정(REVISED)



NEW LIGHT BAPTIST CHURCH

탬파새빛교회

목 차

헌법 (Constitution)		4
전문 (Preamble)		4
제 1 장	총칙	4
제 1 조	명칭	4
제 2 조	위치	4
제 3 조	재단법인	4
제 4 조	목적	4
제 5 조	신앙고백	5
제 6 조	교회의 약속	5
제 7 조	교회의 정치 및 관계	5
규약 (Bylaws)		6
제 1 장	회원 (교인)	6
제 1 조	정의	6
제 2 조	자격	6
제 3 조	의무	6
제 4 조	권리	6
제 5 조	제명	6
제 6 조	징계	7
제 7 조	투표 권리	7
제 2 장	성도총회 (Congregational Assembly)	8
제 1 조	총칙	8
제 2 조	정기 및 임시 성도총회	8
제 3 조	소집공고	9
제 4 조	안건상정	9
제 5 조	회의 정원 및 유회	9
제 6 조	의결 정족수	9
제 7 조	중요 사안	9
제 8 조	표결 및 개표 원칙	9

제 3 장	교회직원	10
제 1 조	담임목사	10
제 2 조	부목사	11
제 3 조	전도사	11
제 4 조	교회 직원	11
제 5 조	일반 직분자	12
제 4 장	안수집사(Deacon)	12
제 1 조	총칙 및 자격	12
제 2 조	피택	12
제 3 조	교육	13
제 4 조	총회의 인정 및 안수	13
제 5 조	임기 및 임무	13
제 6 조	시무정지 및 해임	13
제 5 장	서리집사 (Deacon Acting)	14
제 1 조	자격	14
제 2 조	임무	14
제 3 조	선출방법	14
제 4 조	임기	14
제 6 장	장로 및 권사	15
제 1 조	총칙	15
제 2 조	임무	15
제 3 조	자격, 임명 및 교육	15
제 7 장	제직회 (Board Meeting)	16
제 1 조	총칙	16
제 2 조	구성	16
제 3 조	임무와 역할	16
제 4 조	정기 및 임시 제직회	16
제 8 장	교회행정	17
제 1 조	총칙	17
제 1 항	자격	17
제 2 항	법정대리인	17
제 2 조	서기	17

제 3 조	회계 (재정팀장)	17
제 4 조	감사	18
제 5 조	회계연도	18
제 9 장	위원회 (Committee)	19
제 1 조	총칙	19
제 10 장	교회기관 및 부서	19
제 1 조	총칙	19
제 2 조	남/여 전도회	19
제 3 조	학부모회	19
제 11 장	교회의 성례	20
제 1 조	침례	20
제 2 조	주의 만찬	20
제 12 장	헌법 규약의 개정 및 부칙	20
제 1 조	개정 총칙	20
제 2 조	부칙	20
	서명	49

헌법 (Constitution)

전 문 (Preamble)

새빛교회 회원은 신앙원리를 보존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 헌법은 회원 각자의 신앙을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하고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Florida 주법에 준하여 정식으로 법인화된 교회로서 본 교회의 명칭을 탬파 새빛교회 (New Light Church of Tampa) 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이다.

제 3 조

재단법인

새빛교회는 미국 남침례회 총회와 Florida 남침례회 총회, 한인 남침례총회 및 플로리다 남침례회 지방회에 가입되어 있다.

제 4 조

목적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 및 전도활동 등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돕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며,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교훈과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제1항

본 교회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및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다.

제2항

성경공부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교회에 유능한 주의 일군을 양성한다.

제3항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교회 생활을 배우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갖게 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한다.

제 5 조

신앙고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성도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생활하며 변화된 신앙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1963 년도 남침례교단이 채택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The Baptist Faith and Message)"의 교리적 성명서에 동의 찬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각자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헌신하기로 결단한다.

제 6 조

교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경건하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다음의 약속들을 맺기로 한다.

제1항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 교회의 성장과 영성을 촉진시키고, 예배 의식, 교리 및 말씀훈련을 지속하며, 헌금을 통해 목회를 지원하고, 교회의 사역과 구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2항

우리는 또한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여 경건을 지속하며,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 가족의 구원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거룩한 삶에 본을 보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한다.

제3항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며, 성냄을 더디 하고, 화목함으로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진실하게 교제하기로 약속한다.

제 7 조

교회의 정치 및 관계

제1항

본 교회의 치리권은 성도총회에 있다.

제2항

교회에서 선출되고 권한을 받은 모든 위원회나 기관은 성도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본 교회는 타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나 신앙노선이 같은 교회들과 상호 협조한다.

규약 (Bylaws)

제 1 장

회원 (교인)

제 1 조

정의

우리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있어 자발적이며 자치적인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 2 조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역사를 믿는 18 세 이상의 자로서 우리 교회 입교 후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 항

등록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새빛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단하여 새 가족 훈련을 마치면 등록된다.

제 3 조

의무

제1항

각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영적인 성숙과 개인 신앙 생활을 위해 적극 훈련하며 성도의 교제를 힘쓰고, 교회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성도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제2항

올바른 헌금 생활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

제3항

성경 묵상과 가정 예배 및 개인 전도에 적극적으로 힘쓴다.

제 4 조

권리

제1항

등록 교인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등록 교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침례 교인은 교회의 부서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제 5 조

제명

제1항

타 교회로 이전 시

제2항

타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상 결석한 자

제3항

사망 시

제 6 조 징계

제1항 목적

본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어느 회원이 다른 회원의 과오를 발견하였다면 마태복음 18 장 15 절에서 17 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상기 조치로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담임 목사와 제직회에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 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성도총회에 회부한다. 처벌보다는 구제가 회원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효력

징계 중인 회원은 본 규약 제 1 장 4 조에 명시된 회원(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항 대상

- a. 비도덕적이거나 비기독교적 행위, 혹은 성도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회원으로서의 교회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배하거나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자
- b. 교회 재정의 배임 및 횡령, 투자행위를 하는 자

제 4 항 방식

제직회의 검토를 거쳐 성도총회에 상정하고 투표인 3 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된다.

제 5 항 회복

징계되어 회원 자격이 박탈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기를 원할 시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7 조 투표 권리

제 1 항 투표권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도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투표권 유보 및 추인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서 질병이나 여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3개월 동안 50% 이상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은 자는 투표권이 유보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3 항 투표권 위임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기에게 서면(전자 통신에 의한 문자도 인정)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임자는 성도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성도총회 (Congregational Assembly)

제 1 조 총칙

제 1 항 본 규약 제 1 장 제 2 조에 명시된 회원으로 구성된 교회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 기관이다.

제 2 항 회원 각자는 성도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서 동등한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항 우리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보수, 급여 또는 사례를 받는 자는 피선거권이 유보된다.

제 4 항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제 5 항 담임목사 부재 시 임시 의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제 6 항 모든 기록은 서기가 담당한다.

제 2 조 정기 및 임시성도총회

제 1 항 정기성도총회 (또는 성도사무총회라 한다)는 연 1 회 10 월중에 개최하며, 당해 연도의 결산 및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 아울러 신년도 예산안,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는다.

제 2 항 임시성도총회는 의장의 요청이나 제직회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3 조 소집공고**
- 제 1 항** 정기성도총회는 의장 명의로 안건, 일시, 그리고 장소 등을 1 주일 전에 공고한다.
- 제 2 항** 임시성도총회는 의장 명의로 안건, 일시, 그리고 장소 등을 1 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24 시간 이전의 통보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조 안건상정**
- 본 규약 제 2 장 제 7 조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성도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제 5 조 회의 성원 및 유회**
- 정기 및 임시성도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인원에 포함된다.
- 제 6 조 의결 정족수**
- a. 본 규약 제 2 장 제 7 조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은 투표인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b. 그 이외의 사항은 투표인의 과반으로 한다.
- 제 7 조 중요 사안**
- 제 1 항** 교회 헌법, 내규 및 운영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내용 통보
- 제 2 항** 예산안 변경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 시
- 제 3 항** 담임 목회자의 청빙, 사임 및 해임에 관한 안건
- 제 4 항** 회계 감사 및 위원회 구성원 선출 시
- 제 5 항** 기타 중요 사안
- 제 8 조 표결 및 개표 원칙**
- 제 1 항** 인사 문제와 관련된 모든 안건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안건의 표결은 성도총회에서 정한다.
- 제 2 항** 무기명 비밀투표의 개표 시 의장은 회원 중 2 인을 지명하여 개표, 감표(監票) 및 집계를 담당케 한다.
- 제 3 항** 개표 결과의 집계발표는 서기가 담당한다.

제 3 장 교회 직원

제 1 조 담임목사

제 1 항 자격

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하여 안수받고 교단에 등록된 목사

제 2 항 임무

- a.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b. 모든 예배, 행사, 각종 집회, 각종 사경회, 각종 세미나 또는 신앙 훈련 등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주님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사역이 되도록 인도한다.
- c. 교인들, 교회 직원과 기관 및 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한다.
- d. 성도총회, 제직회 및 교회 각 부설기관의 의장이 된다.

제 3 항 대우

- a. 사례, 목회 활동비 지원, 연금, 건강보험 등은 남 침례교단의 통례에 따른다. 이밖에 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 b. 유급 휴가는 1 년에 2 주이며, 그 이상이 필요할 때에는 제직회에서 정한다.
- c. 매 5 년마다 그 해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6 주의 안식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직회에서 정한다.

제 4 항 정년

정년은 65 세로 한다.

제 5 항 사임

- a. 목회를 사임할 경우 1 개월 전에 공지한다.
- b. 성도총회 결의로 처리한다.
- c. 사임시 제직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5,000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6 항 해임

교리적, 윤리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목회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조 부목사**
- 제 1 항 자격과 임명**
 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하여 안수받고 교단에 등록된 목사인 자로, 필요 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 2 항 사임 결정**
 사임할 경우는 담임목사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제직회에서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 제 3 조 전도사**
- 제 1 항 자격과 임명**
 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출석하거나 졸업한 자로, 필요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 2 항 사임 결정**
 사임할 경우는 담임목사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제직회에서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 제 4 조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은 목회행정 직원과 일반행정 직원으로 구분한다.
- 제 1 항 목회행정 직원**
 목회행정 직원이란 부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전도사 및 신학훈련이나 성경교육을 받은 자로 교회에서 목회행정과 예배를 위한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된 자를 말한다.
- 제 2 항 일반행정 직원**
 일반행정 직원은 교회 비서,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관리인, 보육인 등 예배와 교회 사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를 말한다.
- 제 3 항 임명**
 일반행정 직원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고 담임목사가 검토하여 임명한다.
- 제 4 항 사임 또는 해고**
 목회행정 직원과 일반행정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불성실하면 제직회에서 합의 또는 결의함으로 사임을 권고하거나 해고한다.

제 5 조 일반 직분자

제 1 항 직분의 종류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다. 안수집사는 본 교회 회원 25 명당 1 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집사의 자격

집사는 교회의 청지기로서 봉사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도행전 6 장 1 절에서 7 절까지와 디모데 전서 3 장 8 절에서 13 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 4 장 안수집사 (Deacon)

제 1 조 총칙 및 자격

본 교회는 침례교회로서 안수집사는 영적으로 훈련되어 영적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를 안수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

제 1 항 부부가 본 교회에 충성된 교인으로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남자

제 2 항 제 3 장 제 5 조 제 2 항에 준한 자

제 3 항 주일성수와 온전한 십일조와 헌금 생활의 본이 되며, 공예배와 성경 공부 등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제 4 항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3 년 이상을 시무한자 (단,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년이 되지 않아도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항 침례교회에 속한 타 교회에서 임명한 안수집사로 본 교회 등록 후 1 년이 경과한 자

제 6 항 타 교회 및 교단에서 서리집사로 5 년 이상 시무한 자 중 본 교회 등록 후 1 년이 경과한 자.

제 2 조 피택

제 1 항 제직회는 안수집사 자격 조건을 구비한 회원들의 명단을 선출 1 개월 전까지 확정해서 공고한다.

제 2 항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된다.

제 3 항 회원은 투표용지에 나열된 후보자들에 한해서 복수로 투표할 수 있다.

- 제 3 조 교육**
안수집사로 피택된 자들은 3 개월간 소정의 집사교육 과정을 마친다
- 제 4 조 총회의 인정 및 안수**
- 제 1 항** 피택된 집사는 교육을 받은 후 총회나 지방회 한인 남침례회 총회에서 시험관으로 지명된 목사(또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자)로 부터 구두시험을 받아야 한다. (4 명 이상)
- 제 2 항** 본 교회 담임목사가 안수 위원장이 되며 안수위원은 지방회와 총회에서 파송되는 목사가 된다.
- 제 3 항** 제 4 장 제 3 조의 교육 이후 시기를 정하여 안수식을 행한다.
- 제 5 조 임기 및 임무**
- 제 1 항 시무임기**
- a. 시무임기는 3 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성도총회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다.
- b. 안수집사의 정년은 70 세로 한다.
- 제 2 항 임무**
- a. 목회자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다.
- b.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한다.
- 제 6 조 시무정지 또는 해임**
- 제 1 항 시무정지**
- a. 질병이나 여행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예배를 지속적으로 불참석하거나 십일조와 리더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영적인 면과 삶에서의 모습이 리더십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 b. 제 4 장 제 5 조 제 2 항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
- c. 제 1 장 제 3 조에 명시된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제 2 항 복권**
- 시무정지의 경우 1 년 또는 그 이상의 자숙 기간을 가진 뒤에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아 복귀할 수 있다.

제 3 항 해임

제 1 장 제 6 조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성도총회 투표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제 4 항 사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안수집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임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한다.

제 5 장 서리집사 (Deacon Acting)

제 1 조 자격

제 1 항 본 교회 회원으로 출석한지 2 년이 넘은 침례교인

제 2 항 타 교회에서 이미 집사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 년 이상이 된 자

제 3 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일성수를 비롯하여 각종 공적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출석하며, 교회 봉사, 헌금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등에 있어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

제 2 조 임무

제 1 항 목회자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다.

제 2 항 교회 내 각종 부서 및 자치기관의 책임을 맡아 봉사한다.

제 3 항 제직회, 기타 교회 행사 및 모임,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전도 및 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조 선출방법

제 1 항 담임목사는 추천된 서리집사 후보자에게 수락 여부를 사전에 묻고, 그 결과를 제직회에 통보한다.

제 2 항 서리집사 후보는 정기성도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4 조 임기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매년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재임이 가능하다.

제 6 장 장로 및 권사

제 1 조 총칙

남침례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는 명예직으로서, 교회의 부흥 발전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안수 없이 임명받는 직분으로 세운다.

제 2 조 임무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신앙적인 도움을 준다.

제 3 조 자격, 임명 및 교육

제 1 항 자격

- a.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되 주일성수와 헌금생활을 성실히 행하는 자.
- b. 서리집사로 3 년 이상 교회에 봉사하였으며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자.
- c. 위로와 권면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

제 2 항 장로의 임명

- a.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섬긴 후 70 세 이상이 되면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 b. 안수집사직을 거치지 않았어도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제 3 항 권사의 임명

서리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섬긴 후 60 세 이상이 되면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제 4 항 교육

장로 또는 권사로 내정된 자는 임명받기 전, 소정 기간 교회가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5 항 전입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장로 및 권사는 교회 등록 1 년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제직회를 거쳐 임명하여 봉사하도록 한다.

제 7 장 제직회 (Board Meeting)

제 1 조 총칙

- 제 1 항** 교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성도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 조정하는 기구이다.
- 제 2 항**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 제 3 항** 담임목사의 부재시 임시 의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 제 2 조** **구성**

 - 제 1 항** 담임목사, 안수집사 그리고 팀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제 2 항** 담임목사는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목회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권이 유보되며, 필요시 이석을 요청받을 수 있다.
- 제 3 조** **임무와 역할**

 - 제 1 항** 성도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을 사전에 논의한다.
 - 제 2 항** 제직회원 3 분의 1 의 요청으로 임시성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 항** 회원의 투표권을 사전 심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성도총회 개최 전에 작성한다.
 - 제 4 항** 성도총회에서 발의된 제반 안건에 대해 심의, 조정한다.
 - 제 5 항** 기타 내규에 규정된 제반 위임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 제 4 조** **정기 및 임시제직회**

 - 제 1 항** **정기제직회 소집**
정기제직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항** **임시제직회 소집**
임시제직회는 담임목사나 제직회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 제 3 항** **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투표인의 3 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

제 8 장 교회행정

제 1 조 총칙

제 1 항 자격

서기, 회계, 감사 및 행정직의 자격은 본 교회의 회원으로 한다. 매년 제직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이들의 추가 후보자를 성도총회시 출석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제 2 항 법정대리인

비영리단체로서 플로리다 주에 등록되는 교회의 법정대리인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회계(재정팀장), 서기, 안수집사(1 인)로 구성한다.

제 2 조 서기

제 1 항 선출

서리집사 중 성도총회에서 매년 선출하며 최대 3 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제 2 항 임무

-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기록 보관한다.
- 성도총회와 제직회의 서기를 겸임한다.
- 회원 명부 보관, 회원 입회, 이명, 사망일자 및 침례의 기록 등을 보존한다.
- 교회의 모든 공문의 기록 원본은 교회의 사무실에 비치한다.
- 교회에 속한 모든 계약, 증서, 법정서류 등의 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 3 조 회계(재정팀장)

제 1 항 선출

회계(재정팀장)는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 중 매년 성도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대 3 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2 항 임무

- 본 교회에 헌납된 현찰 및 기타 재산들을 접수 보관한다.
-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지출 결정 사항에 의거해 청구서, 계산서 그리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 보고서는 매 분기 감사를 받게 되며 분기별 예산 집행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해야 한다.

- d.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부서 및 항목별로 기록, 매년 정기성도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 교회에 속한 모든 계약, 증서, 법정서류, 회계 보고서 등의 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 3 항 관리

- a. 은행의 서명권한은 재정팀장, 당 회계연도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은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 중 1 인, 그리고 담임목사가 된다. 위 3 인은 은행 구좌에 접속 권한을 가진다.
- b. 제 8 장 제 3 조 제 3 항 a. 의 서명 권한의 변경은 성도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4 조 감사

제 1 항 총칙

- a. 성도총회에서 2-3 인을 선정한다.
- b.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 c. 결원 시 제직회에서 선출하며 잔여임기는 당 회계연도에 한한다.

제 2 항 임무

- a. 매 분기별 회계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 b. 당 회계연도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성도총회에 보고한다.
- c. 당 회계연도 감사 결과는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 5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 월 1 일에 시작하여 익년 10 월 31 일에 끝난다.

제 1 항 회계운용

- a. 교회 재정의 성서적 원칙은 십일조와 기타 헌물에 의거한다.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책정과 채택이 있다.
- b. 교회의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가 소유 관리한다.
- c. 교회에서 접수한 지정된 헌납은 헌납인의 원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성도총회의 결의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d. 채무가 필요한 경우 성도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9 장 위원회 (Committee)

제 1 조 총칙

제 1 항 성도총회를 통해 구성한다.

제 2 항 위원회의 기간과 목적은 사안에 따라 정한다.

제 3 항 각 위원회는 5 인 또는 7 인으로 선출한다.

제 4 항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 10 장 교회 기관 및 부서

제 1 조 총칙

교회의 모든 기관 및 부서는 목회와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1 항 팀장

각 팀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제직회를 거쳐 성도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 조 남/여 전도회

남/여 전도회는 각각의 규약에 따른다.

제 3 조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정규 모임 외에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의 사역직원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장 교회의 성례

제 1 조 침례

제 1 항 침례식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침수함으로 고백하며 본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 2 항 집례는 담임목사가 한다.

제 2 조 주의 만찬

a. 담임목사가 집례하고 집사와 장로들이 보조한다.

b.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제 12 장 헌법 규약의 개정 및 부칙

제 1 조 개정 총칙

제 1 항 본 헌법과 규약은 성도총회에서 투표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제 2 항 개정 제의된 내용은 의장 명의로 1주일 전에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 3 항 교회 헌법 및 규약은 연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4 항 우리 교회 회원 누구나 헌법 및 내규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및 심의 요청시 제직회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성도총회에 상정한다.

제 2 조 부칙

제 1 항 일사부재리 원칙

성도총회에서 기각된 안건은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재 상정할 수 없다.

제 2 항 비 규정 사항

본 헌법 및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관례 및 전례에 따른다.

제 3 항 효력과 상실

개정된 교회헌법 및 규약은 성도총회 가결 즉시 제정 선포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구 헌법과 내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23 년 7 월 9 일

헌법개정위원회: 나이삭, 전영임, 유상호, 이재정, 이정운, 최성미, 최은영

위의 규약은 2023 년 7 월 9 일 탐파 새빛교회의 성도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서 기: 전영임

서 명:



담임목사: 김섭리

서 명:

